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7조의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연 락 처	(044) 203 - 7012